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30
----------	-----

2023. 10. 18.(수)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이태훈 의원 등 7인
- 나. 제출일자 : 2023년 10월 4일
-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4일
- 라. 상정일자 : 2023년 10월 16일
  -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태훈 의원)

### 가. 제안사유

- 포상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 수여 자격 미달자에 대한 표창 제한 조문을 신설하고,
-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 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 및 부상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해당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포상 대상자 결정 시 공적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정비(안 제10조제3항)
- 포상에 부적절한 자에 대한 포상 제한 조항 신설(안 제12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 받은 자에 대한 취소 조항 신설(안 제1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 에 의한 → 에 따른
  - 약칭사용 :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충청북도민(이하 “도민”라 한다)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자 → 사람
  - 기타 → 그 밖의

##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서정호)

-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본 조례는 그 간 수여 제한 규정 및 환수 규정의 부재로 자격 미달자에 대한 포상 수여 제한 및 부정 포상 수여자에 대한 환수 조치가 곤란하였음.
-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에 표창금지 조항을, 제13조에 포상 취소 조항 신설을 통해 자격 미달자와 부정 수여자에 대한 제한 및 환수의 곤란을 해결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와 문장 정비를 통해 본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였음.
- 따라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의 효율적 달성과 제도 운용상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포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청북도 포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자치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충청북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도민”이라 한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도지사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

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도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도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도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을 받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표창장, 감사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에게는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할 필요가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도의 실·국·본부·원장, 산하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③ 표창장은 제11조에 따른 충청북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1조(충청북도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 대상자의 공적 및 포상 추천의 적정성,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사유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운영과장 또는 인사혁신과장이 된다.

⑤ 공적심사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1.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재직 중 불문경고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9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4.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5.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6. 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모범공무원 포상의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도지사가 표창계획에 표창금지 대상으로 정한 사람

**제13조(포상취소)** ① 제10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표창장, 감사장 또는 상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한다. 다만,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5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충청북도지사	○	○	○	㉠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충청북도지사	○	○	○	㉠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	상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문)			
		년	월	일		
		충청북도지사	○	○	○	㉠

##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추 천 관			
년 월 일 (인)			

주요 학력 및 경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호 수	포년 월 상일	포상종 별	포상기 관	피 포 상 자				포상을 하게된 공개 적요	기념품 또는 부상	참 고
				직 또 직	위 는 명	소 또 주	속 는 소			

(포상대장은 표창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 관련법령 발췌

### □ 「상훈법」

제7조(서훈의 확정)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서훈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상훈법 시행령」

제3조(서훈의 추천) ② 서훈 추천권자가 서훈을 추천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훈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훈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같은 서식의 영문 공적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서훈의 취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 없이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서훈 추천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

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 「정부 표창 규정」

**제8조(추천절차)** ①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추천할 때 「상훈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표창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상을 추천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표창 대상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서식의 영문 공적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1.~2. 생략

**제18조(표창 취소의 절차)** ①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시상을 받은 자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같은 항 제1호의 사유를 제외한 표창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창의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표창 추천권자의 취소 조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표창의 취소)** 제18조에 따라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시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시상을 취소한다.

**제20조(표창 취소의 공표)** 표창 추천권자는 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

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표창이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표창 등의 환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상장, 수장·수치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이하 “표창등”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창 추천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표창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표창이 취소된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표창 추천권자로부터 표창등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공적심사)**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기관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관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급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을 심사한다.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

### ○ 사 유

- 의안의 개정 내용이 조례 운영에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구 삭제 및 표창제한, 포상취소 조문을 신설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의안의 내용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